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 영 실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복지와 보건의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 재 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맹견에 의한 시민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배설물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등록대상 동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 영 실 위원장님과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살고 맹견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